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93호

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94(2020.09.24.)호로 결정된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하여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위 실효 결정으로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은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도시계획시설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17일

서울특별시

I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조서

1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해제

구분	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정	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	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	10,470	-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			

2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: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

3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4. 토지이용계획 : 폐지

구 분	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기정	총 계		10,470.0	100.0	-
	정비기반시설 등	도 로	324.5	3.1	
	획 지	획 지	10,145.5	96.9	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				

5. 건축물의 주용도 · 용적률 · 건폐율 · 높이 ·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: 해제

구분	주용도	건폐율	용적률	층수(높이)	연면적(㎡)	비고
기정	공동주택 및 판매시설	59.59% 이하	393.92% 이하	28층 이하 (최고높이 91m 이하)	77,909.63㎡ 이하 (매장면적 : 13,364.64㎡ 포함)	-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					

6.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사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동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함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: 해제

구분	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정	길음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	10,470	-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			

2. 용도지역 · 지구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3. 토지이용계획 : 폐지

구 분	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기정	총 계		10,470.0	100.0	-
	정비기반시설 등	도 로	324.5	3.1	
	획 지	획 지	10,145.5	96.9	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				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폐지

구 분		가 구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기정	획 지	획지1	10,470.0	100.0	-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				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해제

구 분			내 용	비 고
기정	허용용도		-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※ 획지1	-
	건폐율		- 59.59% 이하	
	용적률		- 393.92% 이하	
	높이		- 28층 이하 (91m 이하)	
	건축선	건축한계선	- 도로경계로부터 3,6,10m - 인접대지경계선 1.5m(판매시설), 3m(공동주택) ※ 건축한계선은 '지구단위계획 결정도' 에 따름	
	대지내 공지	공개공지	■ 신설 :2개소(817.62㎡) - 공개공지는 주요도로 또는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 ※ 적용위치 :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일원	
전면공지		■ 신설 : 폭 4m(299.08㎡) -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공간 활용 ※ 적용위치 :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일원		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			

5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 제2항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 상실에 따라,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해제

Ⅲ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.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(변경) 조서 :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환원	시장	소매시장	길음동 535-8번 일원	-	증) 4,840.7	4,840.7	서울시고시 제386호 ('85.6.18)	-

2.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: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1	55	35~38	보조간선 도로	3,550 {99}	해화동 광장	미아 사거리	일반 도로	-	건고시294호 (78.10.02)	{ } 구역내 도로연장
변경 (환원)	대로	1	55	35~36	보조간선 도로	3,550 {19}	해화동 광장	미아 사거리	일반 도로	-	건고시294호 (78.10.02)	
기정	소로	1	A	10	국지도로	77	길음동 535-8	길음동 877-181	일반 도로	-	-	관리계획도면 연장반영 구역내 구간 폭원2~5m 확장
변경 (환원)	소로	2	15	8	국지도로	70	길음동 535-8	길음동 877-255	일반 도로	-	서울시고시 제1992-210호	-

나.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 : 폐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입체적 결정범위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용도	면적(㎡)	수직적 범위		
기정	공1	공공 청사	공공업무시설	성북구 길음동 535-8 번지 일원	마을 공동체 종합지원 센터	- 연면적 : 2,287.35㎡ 지하1층 327.52㎡ 지하2층 1,959.83㎡ (전용 : 1,517.21㎡)	■ 층수 : 지하1~2층 (지하주차장 10대포함)	서울시고시 제2020 -394호 ('20.9.24)	-
	공2	공공 청사	공공업무시설	성북구 길음동 535-8 번지 일원	스타트업 지원센터	- 연면적 : 2,286.36㎡ 지하1층 348.43㎡ 지하2층 1,937.93㎡ (전용 : 1,517.66㎡)	■ 층수 : 지하1~2층 (지하주차장 10대포함)		
변경	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								

3. 변경취지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라, 같은 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은 실효(폐지) 되고,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는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IV. 관련도면 : 따로붙임

1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(☎02-2133-8498)와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53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2.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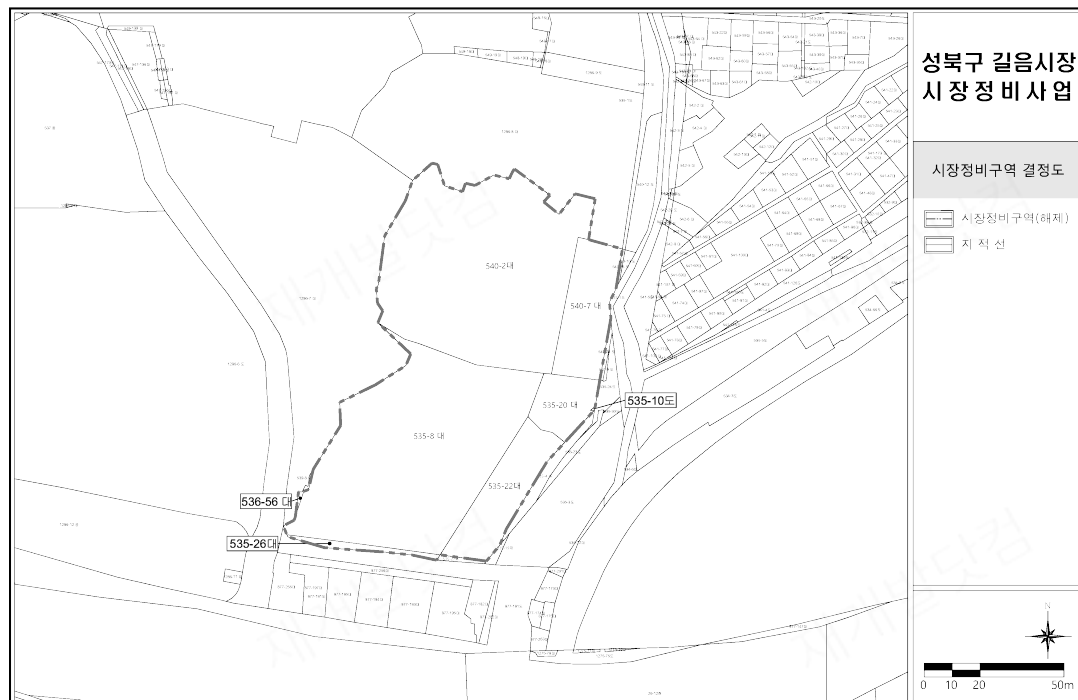
V. 기타사항

1. 위 시장에 대하여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
 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음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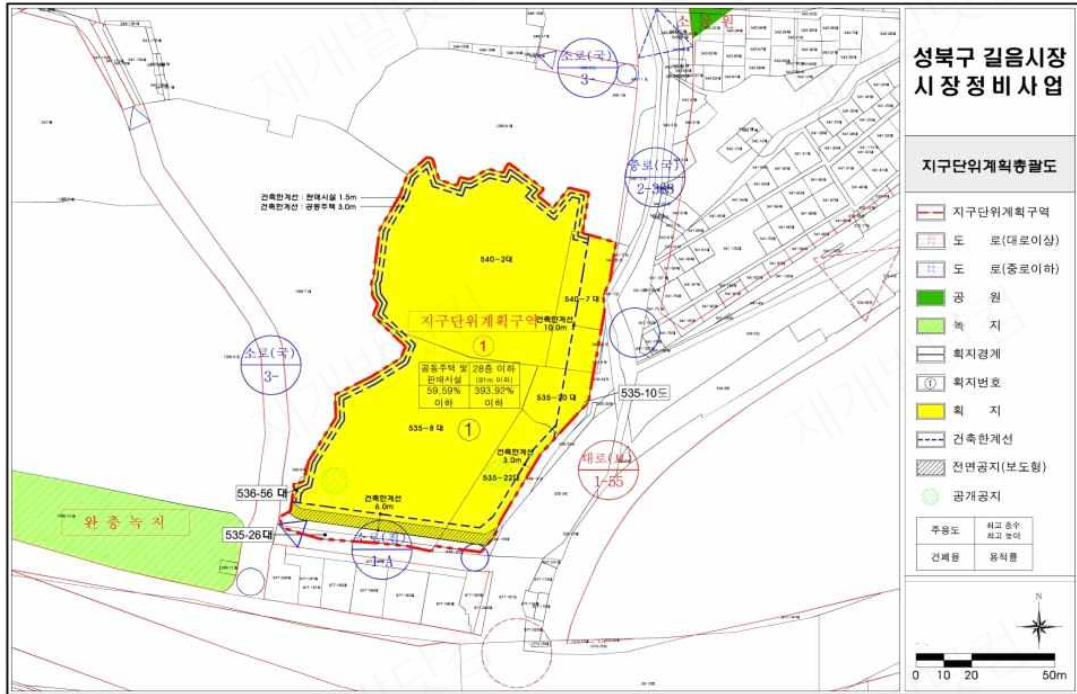
붙임. 길음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
□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(실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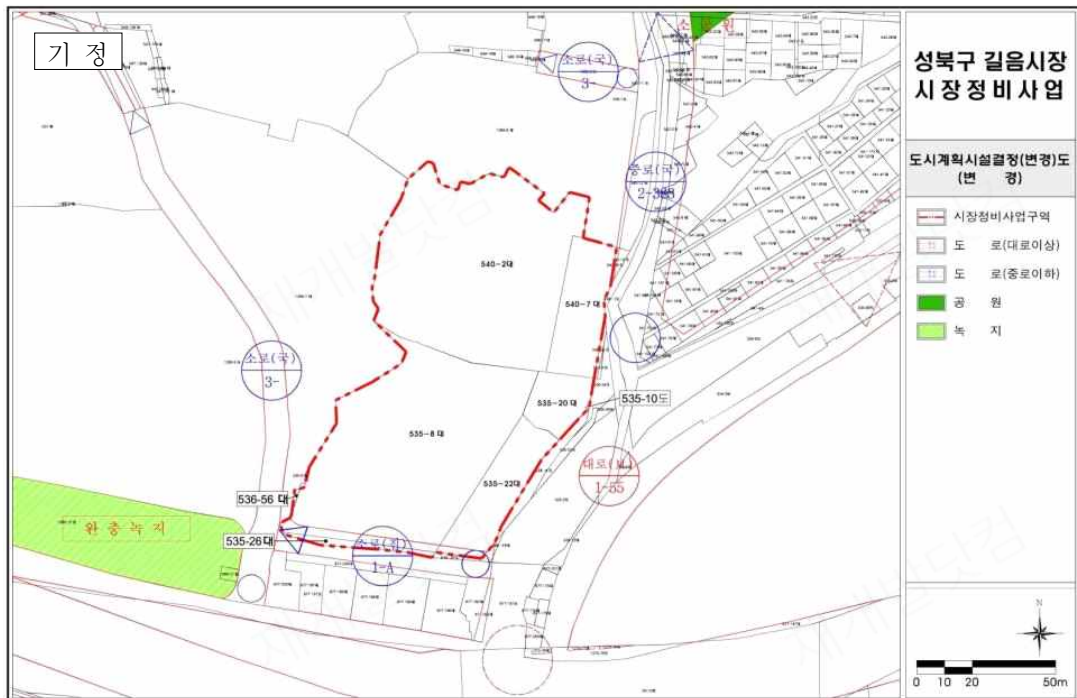
□ 시장정비구역(해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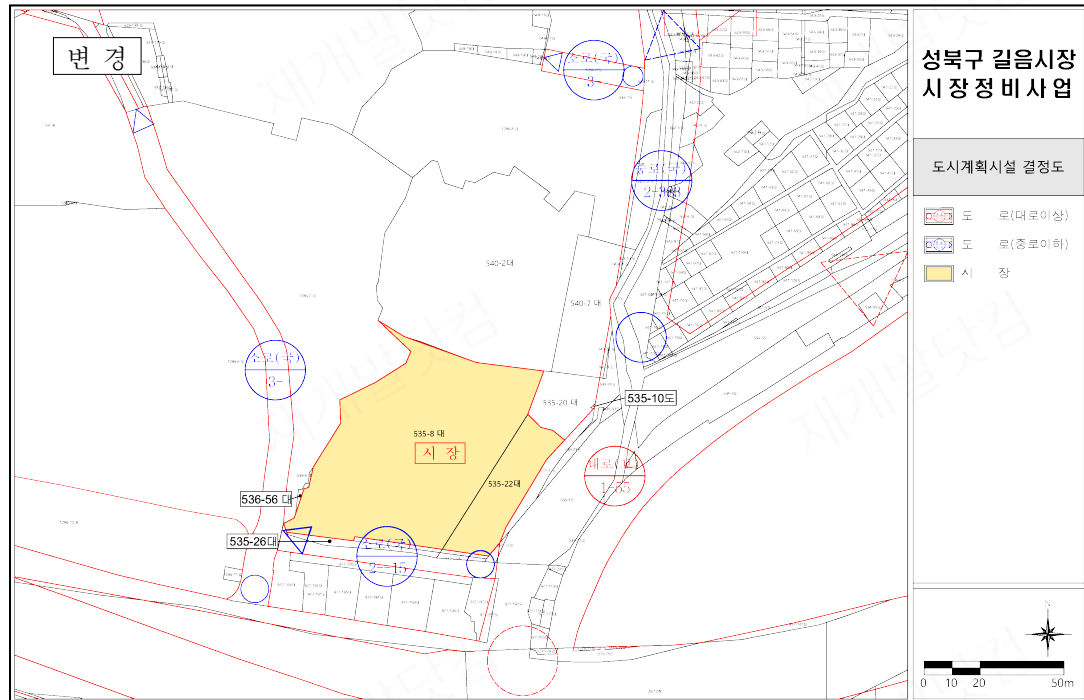
□ 지구단위계획(해제)



□ 도시계획시설(기정)



□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 [변경(환원)]



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(폐지)

